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866)

2021.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한기영 의원 발의]

의안번호 2866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한기영 의원 (찬성 14인)
-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5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서울시 공중화장실 관련 여성용시설 확충,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항 규정(여성화장실 대변기 수 확충 사업,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등)과 자구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위생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해당 개정안은 공중화장실과 관련해 여성용 시설을 확충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의 자구수정을 위해 발의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용화장실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음.

〈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화장실의 유형

구분	내용
공중화장실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유료화장실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

-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고,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의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의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 (2021년)

(단위 : 개소)

계	빌딩	상가 및 근생시설	주유·충전소	시장·대규모점포	종교시설	음식점
1,249	554	272	195	97	63	68

- 또한, 서울시에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자치구에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사업예산서 기준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과 관련해 추진 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시민건강국 공중화장실 관련 사업편성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예산편성 현황
1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 공중화장실 표본 500개소	·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및 지적사항 개선 ·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 지원	(시비) 42,000천원
2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지원	· 개방화장실 1,000개소	·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자치구 지원 ·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지급 및 안내표지판 부착 등	(시비) 540,000천원
3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 확충	· 공중화장실 5개소 (자치구 수요조사 반영)	· 여성용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 지원	(시비) 200,000천원 (구비) 200,000천원
4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	· 민간화장실 9개구 15개소('21년 기준)	· 남녀분리, 층간분리 또는 안전시설(비상벨, 조명개선, 변기실 출입문 시건장치 등)	(시비) 50,000천원
5	공중화장실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 공중화장실 101개소(자치구 수요조사 반영) · 민간개방화장실 25개소	· 공중화장실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지원 · 민간개방화장실에 CCTV 설치 지원	(시비) 372,600천원 (구비) 310,100천원

출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 해당 개정안에서는 여성용 시설 및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관련 지원사항(여성화장실 대변기 수 확충,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였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민간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민간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p>
<p>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운영비의 교부기준에 대해서는 <u>별표1</u>에 따른다.</p> <p>③ ~ ⑤ (생략)</p> <p>⑥ 시장은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위생 및 <u>시민의 이용편의 향상</u>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별표</u>-----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이용편의 향상</u>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p>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여성화장실의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 지원</u> <u>3의3.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u>
4. · 5. (생략) ⑦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u>[별표1]</u> <u>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조건표</u>	<u>[별표]</u> <u>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조건표(제4조제2항 관련)</u>

가. 여성화장실의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 지원

- 공중화장실법 제7조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 등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2019년 1월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개방·이동·간이화장실에 설치된 남성용 변기(소변기·대변기 포함)는 36만여 개이고, 여성용은 22만여 개로서, 여성용 변기수의 합이 남성의 약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¹⁾
- 또한, 여성의 경우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오래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에도 여성화장실의 변기 및 편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1) 정재환(2019). 「공중화장실의 여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1550호. 국회입법조사처.

- 이미 서울시에서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여성용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는 바, 해당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까지 그 범위를 넓혀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표〉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시비 교부내역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백만원)	시설개선 수량 (공중화장실 개소)
2018	광진구	50	2
	양천구	25	1
	강서구	100	1
	관악구	45	1
	송파구	60	2
	합계(7개소) 280		
2019	광진구	35	1
	노원구	45	1
	송파구	50	1
	강동구	50	1
	합계(4개소) 180		
2020	종로구	70	1
	성북구	60	1
	노원구	50	1
	합계 (3개소) 180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

-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각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문제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여성피해자 중심의 성범죄로 나타난 바 있음.²⁾
- 이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1.7.20. 개정, 2023.7.21. 시행)을 통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2) 임태경·이소영(2020). 「공중화장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울시에서도 302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 개정된 내용³⁾을 통해 시장이 관내 개방화장실에서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선행된 상위법 개정사항과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개방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음.

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

3) 여성화장실의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 지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설치 지원 사항.